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0호, 2024. 3. 5., 타법개정]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12. 7. 31.>

**제4조 삭제** <2012. 7. 31.>

**제5조 삭제** <2012. 7. 31.>

**제6조 삭제** <2012. 7. 31.>

**제7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09. 12. 24., 2011. 6. 24., 2011. 10. 28., 2016. 9. 22., 2016. 11. 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31.>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7. 31.>

1.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4.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해약·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험·분석방법이 없고, 환경부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시험·검사 방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것
  2.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할 것
- 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2022. 8. 1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능력
    - 가.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간이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 성능인증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것
      - 1) 대기 분야: 3명 이상
      - 2) 수질 분야: 3명 이상
      - 3) 소음 분야: 2명 이상
      - 4)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 5)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 나.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것
      - 1) 자동차 분야: 6명 이상
      - 2) 대기 분야: 5명 이상
      - 3) 수질 분야: 5명 이상
      - 4) 소음·진동 분야: 2명 이상
      - 5) 토양 분야: 5명 이상
      - 6)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 7) 실내공기질 분야: 4명 이상
    - 다.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정용품(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 검정(檢定) 업무의 경우: 4명 이상
  2.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필요한 분야별 시설 및 장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 7. 31.]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 7. 3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검사 분야 또는 검사 대상 기기
4. 기술능력
5. 시설 또는 장비

[제목개정 2012. 7. 31.]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2017. 7. 17., 2022. 8. 16.>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 가.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추 것
      - 1) 대기 분야: 3명 이상
      - 2) 수질 분야: 3명 이상
      - 3) 소음·진동 분야: 1명 이상
      - 4)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 5) 약취 분야: 2명 이상
    - 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추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 다.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 가.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 나.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삭제 <2022. 8. 16.>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1., 2022. 8. 16.>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측정대행 항목
4. 기술능력
5. 실험시설 또는 장비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 <2020. 9. 29.>]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보급 촉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3조의5(시험·검사기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6. 12. 20., 2017. 1. 17., 2017. 7. 17., 2018. 1. 16., 2018. 10. 16., 2018. 12. 11., 2020. 9. 29., 2024. 3. 5.>

1.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2.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5.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
9.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 10의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기·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진동 분야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판정
  2.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평가하여 판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7. 31.]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0. 9. 29.>]

-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9. 29.>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2.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 ②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⑥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신설 2012. 7. 31., 2020. 9. 29.>
- ⑦ 제1차 시험의 합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신설 2012. 7. 31.>
- ⑧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7. 31.>
- ⑨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7. 31.>

-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31., 2018. 12. 11., 2020. 9. 29., 2021. 12. 16., 2022. 8. 16.>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3,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7. 31., 2018. 12. 11.>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7. 31., 2017. 7. 17., 2022. 8. 16.>

1.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1의3.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리(受理)
- 1의4. 법 제9조제2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의 승인·취소 또는 조치명령
- 1의5. 법 제9조제3에 따른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2. 법 제1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변경승인·수입신고의 취소 및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 6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와 그 판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조치명령
7.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8.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1.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3. 8.>

1. 제13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의3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2022년 1월 1일

3.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2022년 1월 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4. 12. 9., 2020. 9. 29., 2022. 3. 8.>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제34290호, 2024. 3. 5.>(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1항제4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으로 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 1] <신설 2020. 9. 29.>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가.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 나.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측정대행계약의 평가
  - 다.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2. 측정대행계약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의 절차 및 수행방법
  - 나.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감독 방법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6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9. 29.>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 (제15조제1항 관련)

검정 분야	검정방법	검정과목
대기환경 측정 분석 분야	필기시험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악취 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실기시험	일반항목 분석, 중금속 분석, 유기물질 분석
수질환경 측정 분석 분야	필기시험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실기시험	일반항목 분석, 중금속 분석, 유기물질 분석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 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1호	50	70	100
나.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2호	50	70	100
다.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	법 제35조제2항	50	70	100

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 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2호의2			
라.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2호의3	50	70	100
마.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3호	50	70	1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	50	70	100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의2	50	70	100
아. 법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의3	50	70	100
자. 법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의4	50	70	100
차.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300	300	300
카.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5호	50	70	100

타.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6호	100	100	100
파.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7호	50	70	100